

초록우산 서울지역본부
2026 기본생활지원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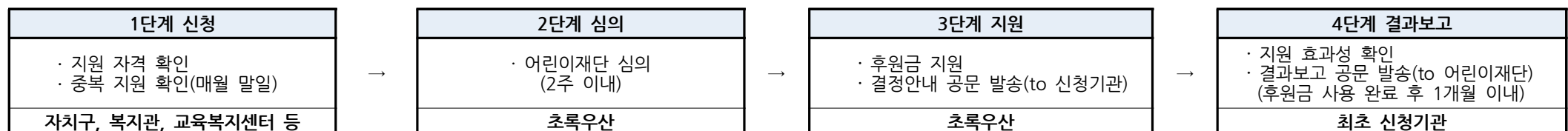
2026. 2.

2026 초록우산 서울지역본부 기본생활지원 안내

- 지원대상: 만18세 미만의 모든 아동
- 신청기한: 매월 말일
- 유의사항: 아동 가정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<예·적금, 사적이전소득, 대출 등 자부담 가능 여부> 면밀히 파악 후 신청기관이 객관적으로 작성 후 제출
- 결과보고: 후원금 사용 완료 후 1개월 이내

구분	의료지원	주거지원	돌봄지원	방송사례지원
지원내역	- 수술비 및 치료비(입원, 외래) - 치과치료비 - 특수치료비(심리, 언어, 인지, 놀이, 재활치료 등) - 의료보장구 구입비(건강보험공단지원 확인必) - 진단검사비	- 일반 전월세보증금 -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서울주택도시공사(SH) 주거복지사업 선정 대상자 보증금의 본인부담금 - 주거환경개선비 - 희망채움홈(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안정지원)사업	- 위기긴급지원 - 보호자 의료비 ※ 공적자원 우선 활용	- KBS, MBC, SBS - 라디오 방송사례 - 온라인 매체
신청 구비서류 ※ 3개월 이내 서류	<공통 서류> ① 사례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처리 및 초상권 이용 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(뒷자리 숨김) ④ 경제증빙서류:수급자/차상위 증명서, 일반 저소득 가정: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, 세목별과세증명서(보호자 모두)			
	· 지원 내역별 추가서류 - 수술비 및 치료비: 진단서 또는 소견서, 치료비 추정서, (해당시)약제비 처방전, 이식승인서 - 치과치료비: 진단서 또는 소견서, 치료비추정서 - 특수치료비: 진단서 또는 심리검사보고서(3개월이내), 치료비 추정서 또는 심리치료계획서, 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- 보장구 구입비: 보장구 처방전, 견적서 - 진단검사비: 진단서 또는 소견서, 검사비추정서	· 현 주거확인서 · 지원 내역별 추가서류 - 일반 전월세보증금: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(이사 예정 지), 이사 예상 거주지의 전월세 시세 확인하여 내용 기재 (이사 미확정 시) - 주거복지사업 보증금: LH/SH 선정 공문, 증빙서류 - 주거환경개선비: 견적서 및 타 견적서, 임대인 동의서(공사 진행 시)	개인회생 및 파산서류, 공과금 미납 서류, 폐업사실 증명서, 부채증명원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기타 신청 사실 입증 서류	- 부채증명원 - 기타 신청 사실 입증 서류
심의기준	시급성, 회복 가능성, 예후 상황, 타자원 연계 여부	시급성, 자립의지, 보증금 안정성, 타자원 연계 여부	시급성, 위기상황정도	시급성, 방송 동의 범위
지원한도	- 일반의료비 : 치료비 추정서 기준 - 특수치료비 : 최대 700만원(회당 7만원 상한) - 치과치료비 : 최대 700만원(아동별 1회 한정) - 보장구 구입비: 견적서 기준 - 진단검사비 : 검사비 추정서 기준	- 보증금: 최대 1,000만원 - 주거환경개선비 - 집수리 최대 500만원, 필수가전가구 지원 최대 100만원	최대 500만원	최대 3,000만원 매체별 상이

○ 지원절차



1. 2026 기본생활지원사업 개요

□ 개요

○ 사업목적: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아동과 가정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도모

○ 사업방향

① 아동권리기반 복지사업 실천

아동을 지원하는 모든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며 아동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아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보호자가 의무를 다하도록 촉진합니다.

② 아동보호정책 준수

사업의 전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며, 아동이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합니다.

③ 한정된 자원의 효과적 지원

후원금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공적자원을 우선활용하고 지원금액에 대한 명확한 산출과 아동가정의 변화 가능성, 자부담 계획을 고려하여 지원합니다.

④ 복지사각지대 아동지원

복지사각지대 아동 발굴 및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노력합니다.

⑤ 후원금 지원의 투명성 강화

심의를 통해 후원금을 배분하고 지원상황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합니다.

○ 사업대상

구분	세부 대상 정의
일반아동	· 만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· 기존 지원아동에 대한 지속,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만24세까지 지원 가능 · 중점사업의 경우 각 사업별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
보호대상아동	·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, 사각지대(장애인 시설 등) 아동 ·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,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 (아동복지법 제3조)
가족돌봄아동	· 신체질환, 정신건강 문제, 만성질환 장애, 약물중독, 통번역(언어청각장애, 이주배경 가족원), 고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만 24세 이하의 아동 ※ 후원처 연계 사업의 경우 만34세 이하의 청년도 관련 법령¹⁾에 의거하여 사업대상에 포함 될 수 있음

구분	세부 대상 정의																				
	※ 세부기준(체크리스트 ①~ ④ 기준을 모두 충족 시)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번호</th><th>질문내용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①</td><td>해당 아동·청소년이 신청 시점에 만 24세 이하입니까?</td></tr> <tr> <td>②</td><td>아동·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신청 지역 내에 있습니까?</td></tr> <tr> <td>③</td><td>아동·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가족원이 신체질환, 정신건강 문제, 만성질환, 장애, 약물중독, 통번역(언어·청각장애, 이주배경 가족원 등)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입니까?</td></tr> <tr> <td>④</td><td>집안일(정리정돈, 세탁, 쓰레기 배출, 식사준비, 청소, 장보기 등)</td></tr> <tr> <td>돌봄 역할</td><td>일상생활보조(외출 동행, 탈착의, 샤워, 세수, 화장실 이용 보조돕기, 식사보조 등)</td></tr> <tr> <td>(1개 이상 해당 시 신청 대상 포함)</td><td>정서지원(말벗, 격려, 위로, 산책, 책 읽기 등)</td></tr> <tr> <td></td><td>어린형제자매돌봄(형제자매의 공부 봐주기, 놀아주기, 안전보호 등)</td></tr> <tr> <td></td><td>기타지원(간병, 병원 동행, 약복용, 체위 변경, 안마, 이주민 또는 장애를 가진 가족구성원을 위한 통번역, 경제관리 등)</td></tr> <tr> <td></td><td>생계유지(아르바이트, 일용직 등)</td></tr> </tbody> </table> ※가족돌봄아동 청소년이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원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가족(직계혈족, 형제자매 등)에 해당해야 하나, 민법상 가족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돌봄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 지원 가능 ※ 아동·청소년이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예) 청소년 부모의 자녀돌봄	번호	질문내용	①	해당 아동·청소년이 신청 시점에 만 24세 이하입니까?	②	아동·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신청 지역 내에 있습니까?	③	아동·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가족원이 신체질환, 정신건강 문제, 만성질환, 장애, 약물중독, 통번역(언어·청각장애, 이주배경 가족원 등)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입니까?	④	집안일(정리정돈, 세탁, 쓰레기 배출, 식사준비, 청소, 장보기 등)	돌봄 역할	일상생활보조(외출 동행, 탈착의, 샤워, 세수, 화장실 이용 보조돕기, 식사보조 등)	(1개 이상 해당 시 신청 대상 포함)	정서지원(말벗, 격려, 위로, 산책, 책 읽기 등)		어린형제자매돌봄(형제자매의 공부 봐주기, 놀아주기, 안전보호 등)		기타지원(간병, 병원 동행, 약복용, 체위 변경, 안마, 이주민 또는 장애를 가진 가족구성원을 위한 통번역, 경제관리 등)		생계유지(아르바이트, 일용직 등)
번호	질문내용																				
①	해당 아동·청소년이 신청 시점에 만 24세 이하입니까?																				
②	아동·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신청 지역 내에 있습니까?																				
③	아동·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가족원이 신체질환, 정신건강 문제, 만성질환, 장애, 약물중독, 통번역(언어·청각장애, 이주배경 가족원 등)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입니까?																				
④	집안일(정리정돈, 세탁, 쓰레기 배출, 식사준비, 청소, 장보기 등)																				
돌봄 역할	일상생활보조(외출 동행, 탈착의, 샤워, 세수, 화장실 이용 보조돕기, 식사보조 등)																				
(1개 이상 해당 시 신청 대상 포함)	정서지원(말벗, 격려, 위로, 산책, 책 읽기 등)																				
	어린형제자매돌봄(형제자매의 공부 봐주기, 놀아주기, 안전보호 등)																				
	기타지원(간병, 병원 동행, 약복용, 체위 변경, 안마, 이주민 또는 장애를 가진 가족구성원을 위한 통번역, 경제관리 등)																				
	생계유지(아르바이트, 일용직 등)																				
이주배경아동	- 국제결혼가정자녀(국내출생, 국외출생), 외국인가정자녀(국내출생, 국외출생), 탈북배경 아동(남한출생, 북한출생, 제3국 출생) - 본인 또는 부모의 이주배경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배경아동을 지원																				
자립준비청년	- 만18세 이상~만24세 이하 보호종료아동 및 보호연장아동 - 보호종료(보호연장 포함) 이후 안정적으로 자립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																				
위기영아	- 신체적·정서적 발달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0~36개월 이하의 영아 - 위기임산부 출산: 위기 임산부²⁾로부터 태어나 출생 전·후 원가정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영아 예) 보호출산, 혼외자/미혼부모, 이주민, 장애 등 - 양육위기: 보호자의 신체·정신·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돌봄·의료·주거 등의 지원이 필요한 영아 예) 부모빈곤, 부모질병, 교정시설 입소, 부모 이혼 등																				

○ 사업기간: 연중, 매월 심의 후 안내

○ 신청기한: 매월 말일

1) 가족돌봄 등 위기가동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

2)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 (이하 ‘위기임부’ 라 한다)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(이하 ‘위기산부’ 라 한다)으로서 경제적·심리적·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

□ 사업내용

- 아동의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고 아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
- 지원목적에 따라 돌봄비, 교육비, 의료비, 주거비, 인재양성비, 자립성장비, 마케팅사례비로 지원

지원구분	내 용	모집 시기
돌봄비	적절한 양육을 위한 아동 지원	매월 접수
교육비	기초학습능력 향상 및 진로개발을 위한 아동 지원	별도 안내
의료비	질병, 장애 등 의료 문제로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 지원	매월 접수
주거비	주거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아동 지원	매월 접수
인재양성비	재능계발 지원이 필요한 아동 지원	연1회(10월)/별도 안내
마케팅사례비	MBC, SBS, KBS, 카카오 같이가치, 네이버 해피빈, 유튜브 등 온·오프라인 사례 노출을 통한 모금액 지원	수시

□ 지원절차

지원절차	내용	수행기관	비고
신청	· 지원 자격 및 중복지원 확인 · 신청서 작성 · 항목별 구비서류 준비 및 공문 제출	주민센터, 주거복지센터, 복지관 등	매월 말일까지 신청
↓	↓		
심의	· 신청 구비서류 검토 · 시급성, 지원 적절성, 위기 상황 정도, 중복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의 진행 ※ 필요 시 추가 상담 및 가정방문 할 수 있음	초록우산	익월 초 진행
↓	↓		
지원	· 신청기관으로 지원 결정 안내 공문 발송 단, 의료지원의 경우, 치료기관으로 공문 추가 발송 · 후원금 지원	초록우산	심의 후 1주일 이내
↓	↓		
결과보고	· 지원 효과성 확인 · 신청기관 결과보고서 작성 후 공문과 함께 제출	최초 신청기관	후원금 사용 완료 후 1개월 이내

2. 신청안내

□ 구비서류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

□ 의료지원

○ 지원항목

지원항목	세부항목	세부내용	지원 한도	비고
수술비 및 치료비 ※입원/외래	4대 중증질환	• 암·심장·뇌혈관·희귀난치성 질환	금액 제한 없음	치료 부대경비 포함
	화상	• 화상과 관련한 각종 치료		
	이식	• 조혈모세포·간·소장·신장·피부·뼈 이식 등		
	일반질환	• 일반 내·외과 질환, 정형외과 질환 (척추, 고관절 등) • 정신질환에 대한 정신과 치료 • 장애에 대한 재활치료 등		
	치과치료	• 치아우식, 부정교합 등 ※ 부정교합의 경우, 미용 목적은 제외. 저작 장애, 섭식의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적용 ※ 아동별 1회 한해 지원	700만원	
	치료 부대경비	• 교통비, 식비, 약제비, 치료재료비, 간병비 등 ※ 수술비 및 치료비 지원항목에 한하며, 의료비의 10% 내에서 지원		
특수치료비		• 심리치료, 언어치료, 놀이치료 등 - 최대 1년 기준 산출하여 신청 - 치료비 상한선 : 1회 7만원	700만원	
보장구 구입비		• 보청기, 보조기, 휠체어 등	견적서 기준	
진단검사비		• 의료기관 소견으로 정밀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(MRI, CT, 조직검사비 등) • 심리검사비	소견서 기준	심리검사는 30만원 한도

※ 지원 제외 항목: 선 집행된 처리 비용

(단, 선정된 아동에 한해 지원결정일로부터 한 달 전 발생한 비용 소급 적용 가능)

○ 지원기간: 지원결정일로부터 1년(12개월)

○ 구비서류

기본 구비서류	추가 구비서류	
① 사례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처리 및 초상권 이용 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 (주민번호 뒷자리 숨김) ④ 경제증빙서류 -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증명서 - 일반가정의 경우,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원, 세목별과세증명서 (보호자 모두)	수술비 및 치료비	- 진단서 또는 소견서 - 치료비 추정서 - (해당시)이식 승인서
	치과치료비	- 진단서 또는 소견서 - 치료비 추정서 ※ 최소 2개 병원 방문하여 신청서에 비교 금액 기재 요망 ※ 상급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유 기재 必
	의료보장구	- 보장구 처방전 - 견적서
	특수치료비	- 진단서 또는 심리검사 결과보고서(3개월이내) - 치료비 추정서 또는 심리치료계획서 - 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
	진단검사비	- 검사필요 진단서 또는 소견서(금액 명시)
	치료부대경비	- 교통비, 식비, 간병비, 약제비 등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

○ 의료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

- 아동의 현재 의료적 상황, 후원금 사용계획, 치료의 시급성 및 지원의 필요성, 치료 예후 등이 잘 드러나도록 객관적으로, 상세하게 서술
- 공적자원(의료급여, 건강보험공단 지원, 공공바우처 지원, 특히 특수치료비의 경우 확인 필수) 확인 및 기 활용 내용 작성, 상해 및 실손 보험 등 자부담 계획 작성
- 사진 첨부 시 환부가 잘 드러나는 사진 첨부
- 수급 및 차상위로 인한 의료비 감액과 바우처 사용 금액 적용 후 신청
- 선택진료비(특진비)는 최대한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병원 사회사업실 또는 원무과와 신청 단계에서 논의

□ 주거지원

○ 지원항목

지원항목	세부내용	지원한도
주거복지사업 선정대상자 보증금의 본인부담금	• 유형: 영구임대, 전세임대, 매입임대, 국민임대, 공공임대, 장기전세, 행복주택 등 • SH가 지원하는 임대주택도 해당	최대 1,000만원
일반 전·월세 보증금	• 주거복지사업 미대상이나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	
주거환경개선비	• 현 주거지의 지속 거주가 보장되지만,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(집수리, 도배, 장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)	최대 500만원
기타	• 필수 가전·가구 구입비 • 희망채움홈(구,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안정지원) 사업 대상	최대 100만원
※ 지원불가	체납 월세, 체납 공과금	

○ 지원기간: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

○ 구비서류

기본 구비서류		추가 구비서류	
① 사례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처리 및 초상권 이용 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 (주민번호 뒷자리 숨김) ④ 경제증빙서류 -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증명서 - 일반가정의 경우,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원, 세목별과세증명서 (보호자 모두) ⑤ 아동명의 통장사본 ⑥ 현 주거확인서	일반 전월세 보증금	- 임대차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(이사예정지) - 이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않아 임대차 계약서 구비가 어려운 경우, 예상 거주지의 전월세 시세 확인하여 신청내용 기재 ※ 지역, 주거형태, 방의 수, 평수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시세 확인	
	주거복지 사업 선정 대상자	- 주거복지 대상자 증명 및 신청서류 - 기타 선정안내 증빙서류	
	주거환경 개선비	- 견적서 및 타 견적서 - 물품구매 견적서 및 타 견적서 - 임대인 동의서(비 자가인 경우) ※ 물품구매만 신청하는 경우 임대인 동의서 제외	
	기타 추가서류		
- 부채증명서(해당되는 경우) -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 - 기관 자체 판단하에 필요서류 제출			

거주유형에 따른 주거 확인 서류	
전·월세 등	현 주거 임대차 계약서
자가	등기부등본 또는 건축 및 토지대장
시설거주	시설입소 확인서
무료임대	무료임대 확인서
기타 주거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	거주사실 확인서

○ 주거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

- 현 주거지 보증금 잔액, 예·적금, 사적 이전소득, 대출 등 자부담 계획 파악하여 기술
- 주거복지사업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 공적자원 우선 활용
- 보증금 보존 안정성 고려
- 주거환경개선비 신청 시, 공사가 필요한 경우 집주인 동의 필수
- 주거환경개선비의 필수 가전가구 구매 신청의 경우, 지원 가능한 가전 가구 목록 및 금액 한도 확인. 구매 필요 사유 기술 및 기존 가전가구 사진 첨부 필수

〈필수 가전 가구 목록_ 조달청 나라장터 참조〉

연번	물품내용	금액한도(원)	연번	물품내용	금액한도(원)
1	냉장고	1,000,000	5	아동용 책장	100,000
2	세탁기	600,000	6	아동용 의자	150,000
3	에어컨	1,000,000	7	아동용 침대	300,000
4	아동용 책상	200,000			

□ 돌봄지원

○ 지원항목

지원항목	세부내용
생계비지원	- 식비 및 생활용품구입 등
의복비지원	- 방한복, 신발 구입 등
급식 및 도시락 지원	- 학교 급식, 방학기간 도시락
문화생활지원	- 여행, 외식, 취미 및 여가활동 등
기타	- 기타 아동의 양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비용 (보호자의 의료비, 보호자 간병비, 장애보호자 이동비용 등) - 단독 치료부대비용 - 이주배경아동 양육 및 돌봄시설(어린이집, 유치원, 아동복지시설 등) 이용비

○ 지원금액: 최대 500만원

○ 지원기간: 연내

○ 구비서류

기본 구비서류	추가 구비서류
① 사례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처리 및 초상권 이용 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 (주민번호 뒷자리 숨김) ④ 경제증빙서류 -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증명서 - 일반가정의 경우, 건강장기보험료 납부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원, 세목별과세증명서(보호자 모두) ⑤ 아동명의 통장사본	- 개인회생 및 파산 서류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폐업사실 증명서, 공과금 미납고지서, 부채증명원 (해당되는 경우) -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

기본 구비서류	추가 구비서류
▶ 보호자 의료비: 아동 의료비 지원 항목별 구비서류와 동일, 단 치료부대경비는 지원 불가	

○ 신청 시 유의사항

- 예·적금, 사적 이전소득, 대출 등 파악하여 기술
- 체납 월세, 체납 공과금, 과태료, 대출 상환 목적 등은 지원 불가

□ 교육지원

○ 지원항목

지원항목	세부내용
교육비지원	- 입학등록금, 수업료, 기숙사비 등
학원비지원	- 학원비, 학원 교제비 등
신학기지원	- 교복비, 체육복비 등
학습부대비용/학업보조지원	- 학용품, 교재, 도서, 학업보조기기 등
기타	- 기타 아동의 학습지원에 필요한 비용

○ 신청기간: 별도 안내

※ 기본생활지원 대상별 대체 구비 서류

대상	기본서류	개인확인서류	소득확인서류	추가구비서류(선택)
이주배경아동 ³⁾	각 지원별 기본 구비서류 동일	외국인등록증, 여권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출생등록 관련 서류 이외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	근로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(최근6개월)	관련기관 추천서 사실확인서 ⁴⁾ 상담소견서
위기영아 ⁵⁾				
자립준비청년		자립준비청년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보호종료확인서 청소년자립지원기관 이용확인서 등		

3) 이주배경아동의 특수성으로 인해 신청 서류 구비가 어려울 경우(미등록 아동 등) 관련기관 추천서, 사실 확인서 등으로 대체

4) 서식14. 이주배경아동 사실확인서

5) 위기 입산부 및 위기영아가 처한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해 신청 서류 구비가 어려울 경우(출생 미신고 등) 관련기관의 추천서, 사실확인서 등으로 대체

□ 홍보마케팅 및 방송사례 지원

○ 지원항목

지원채널	세부내용	모집시기	지원한도
KBS 동행	- 도움이 필요한 수급, 차상위, 저소득 가정 중 자활 및 자립의지가 있는 가정의 사연 - 한편 당 본편 35~40분, 방송 사례에 대한 지원 후기 15~20분 구성	연중 수시	최소 2,200만원
KBS 라디오 희망충전 대한민국	- 수급, 차상위, 저소득 가정 중 의료비, 생계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정 - 아동 가명, 스토리만 노출 - 주1회 1사례 활용	연중 수시	모금액 (평균700만원)
MBC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	- 백혈병, 심장병, 소아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19세이하 저소득 가정 아동 사례 - 아동당 15분 내외 영상 노출	연1회	최소 2,000만원
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	-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 아동 사례 - 환아, 영케어러, 아이리더, 열악한 주거환경 등 다양한 지원 욕구와 스토리를 가진 아동 사례 - 아동당 15분 내외 영상 노출	연중 수시	최소 1,000만원
기타	- 신문, 잡지, 언론, 라디오, 웹페이지, SNS 등	연중 수시	매체별 상이

○ 지원기간: 연내

○ 구비서류

기본 구비서류	추가 구비서류
① 사례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처리 및 초상권 이용 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 (주민번호 뒷자리 숨김) ④ 경제증빙서류 -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증명서 - 일반가정의 경우, 건강장기보험료 납부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원, 세목별과세증명서(보호자 모두) ⑤ 아동명의 통장사본	- 부채증명원(해당되는 경우) -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

○ 신청 시 유의사항

- 정보공개 범위 논의 후 작성 필수
- 타 재단 혹은 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노출된 이력 확인 후 작성

3. 후원금 지급

- 모든 후원금은 아동 명의 계좌 지급이 원칙
- 필요시 아동 계좌가 아닌 보호자 계좌 등으로 지급
- 의료지원, 주거지원의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지급 논의

1. 의료지원(재단→아동(혹은 보호자) 계좌, 혹은 치료기관 송금)

- 최종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기관 및 치료기관으로 의료비 지원 결정 협조 공문 발송
- 치료기관에서 재단으로 의료비 청구하고, 재단에서 직접 치료기관으로 후불 지급
- 지원금은 신청 당시 결정된 지원항목에 대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2. 주거지원

가. 주거보증금(재단→아동(혹은 보호자) 계좌, 혹은 임대인 계좌 송금)

- 최종 지원 결정 이후 집 계약 2~3일 전 재단에 내용 공유
- 계약서 확인 후 LH 및 SH 계좌로 송금 또는 임대인 계좌로 재단에서 직접 송금
- 후원금 지급 후 임대차 계약서, 거주지 이전 후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와 실거주 일치 여부 확인

나. 주거환경개선비(재단→아동(혹은 보호자) 계좌 송금)

-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(후원금 관리를 위해 협력기관 혹은 신청기관 계좌로 지급 가능)
- 지출 증빙자료 필수 구비

4. 후원금 반납

- 후원금 반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, 사전 공유 후 종결보고서와 함께 후원금 반납
- 후원금 반납 기준
 -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지원된 경우
 - 서류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제출서류, 보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
 - 상황 변화로 인해 후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기 어려운 경우(예, 사망, 수감 등)
 - 후원금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(예, 지원금이 신청인을 위해 사용되지 않거나, 비행, 유흥비, 부채탕감으로 사용된 경우 등)
 - 의료지원 항목에 대해 사보험의 실비청구를 한 경우
 - 지원기간 중 아동 보호자에 의한 아동보호정책 위반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(예, 아동학대 발생 등)

5. 결과보고

- 후원금 사용 및 종결 사유 발생 시점 기준 1개월 이내 제출
- 결과보고서는 신청기관이 아동과 아동 보호자 상담을 통해 지원 효과성이 잘 드러나도록 객관적으로 작성 후 제출
- 제출기한: 후원금 사용 및 종결사유 발생 시점 기준 1개월 이내
- 제출서류: 결과보고서, 사진 4장, 감사서신(필요시 요청). 주거지원 보증금 지원의 경우, 이사 후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